

1994年度

U R 特委活動狀況

U R對策特別委員會

目 次

1. UR 特委 構成	626
2. UR 對策 세미나 開催	627
3. 農村 輿論收斂 懇談會 開催	628
4. 農政有關機關長 懇談會 開催	629
5. 忠北 經濟人斗의 懇談會 開催	630
6. 懇談會 建議事項 處理 結果	631
7. 農產物加工工場 現地 訪問	632

※ 添 附：建議事項 處理 結果

1. UR 特委 構成

□ 構成 目的

- UR 協商 妥結로 인하여 農畜產物의 輸入 開放은 물론 農村 經濟 全般에 公하여 極甚한 被害가 豫想되고 있어,
- 輸入 開放化에 對處하여 農業의 國際 競爭力을 높이고 農村의 地域經濟 安定等 UR의 影響에 綜合的으로 對應코져 함.

□ 構成 概要

- 發 議 者 : 朴 鍾 浣 議員 外 7人
- 構 成 日 字 : '94. 1. 29. (第 98 回 臨時會)
- 特 委 名 : "UR 對策特別委員會"
- 構 成 員 : 14名 (地域 및 所屬 常任委 勘案)
- 時 限 : '94年度 末

□ 活動 概要

- 地域 懇談會를 통한 農村 實態 把握
- 農政 有關機關과의 懇談會 開催
- 忠北 經濟人과의 懇談會 開催
- 其他 建議事項 等 縣案 業務 處理

2. UR 對策 세미나 開催

□ 開催 現況

- 實施 日時 : '94. 4. 25 (月)
- 實施 場所 : 道議會 會議室
- 參席 人員 : 38名
 - UR 對策 特別委員會 委員
 - 參席 希望 議員
 - 農政 關係 公務員 等
- 講師 및 講義 內容

【中央大學校 : 金 誠 勳 教授】

- UR 協商 經過中 主要 結果
- WTO 體制에서의 農業의 살 길
- 韓國 農業이 發展할 길

【農村振興院 : 朴 鍾 貴 (前) 院長】

- UR 協商에 따른 忠北 農業 開發
- 農產物 加工 및 流通
- 農產物 輸出 增大 方案

3. 農村 輿論 收斂 懇談會 開催

□ 開催 現況

- 實施 日時 : '94. 4. 28 (木)
- 參席 對象
 - 農漁民後繼者, 農村指導者, 營農클럽 等
各 分野 邑, 面 代表
- 實施 場所 及 參席 人員 : 5個所 432名

實施場所	清州市廳	沃川郡廳	陰城郡廳	中原郡廳	堤川郡廳
對 象	清州, 清原	報恩, 沃川 永同	鎭川, 槐山 陰城, 增坪	忠州, 中原	堤川市, 郡 丹陽
參席人員	64 名	103 名	80 名	92 名	93 名

- 懇談會 結果
 - UR 協商 經過 內容 報告
 - UR 協商 妥結에 따른 輿論 收斂
 - 農政 分野 建議事項 收斂, 分析

4. 農政有關機關長 懇談會 開催

□ 開催 現況

- 實施 日時 : '94. 4. 29 (金)
- 參席 對象
 - 單位農協, 畜協, 林協, 園協, 農組組合長 代表, 農漁村振興公社 郡支部長
- 實施 場所 及 參席 人員 : 2個所 79名

實施場所	沃川郡廳	中原郡廳
對 象	清州, 清原, 報恩, 沃川 永同	忠州, 堤川, 鎮川, 槐山 陰城, 中原, 丹陽
參席人員	32 名	47 名

- 懇談會 結果
 - UR 協商 經過 內容 報告
 - UR 協商 妥結에 따른 農政有關機關長 輿論 收斂
 - 農政 分野 建議事項 收斂, 分析

5. 忠北 經濟人斗의 懇談會 開催

□ 開催 現況

- 實施 日時 : '94. 5. 3 (火)
- 主 題
 - " UR 協商에 따른 忠北 經濟 活性化 "
- 參席 對象
 - 道內 經濟關聯 有關 機關, 中小企業代表 等
- 參席 人員 : 18名 (特委委員 8, 經濟人代表 10)

【經濟人 代表 : 10名】

- | | |
|-------------|----------------|
| - 忠北經濟研究所 | - 忠北銀行 |
| - 農協道支會 | - 畜協道支會 |
| - 中小企業 忠北支會 | - 貿易振興公社 忠北貿易館 |
| - 貿易協會 忠北支會 | - 清州 商工會議所 |
| - (株) 一和 | - 후생사 |
- 懇談會 結果
 - 忠北 經濟人, 中小企業代表의 輿論 收斂
 - 經濟 分野 建議事項 收斂 分析

6. 懇談會 建議事項 處理 結果

□ 開催 現況

- 實施 期間 : '94. 4 ~ 5月
- 實施 場所 : 道議會 及 市, 郡 會議室
- 參席 人員

- ┌ 農村現地 輿論 收斂 懇談會 : 432名
- ├ 農政有關機關長 懇談會 : 79名
- └ 忠北 經濟人과의 懇談會 : 18名

□ 建議 事項 處理 結果

計	對政府 建議 (農發委)	常任委 移牒 處理	結果 回信	其 他
125件	18 件	2 件	81 件	24 件

○ 建議 事項 處理結果 分類

- 對政府 建議事項 : 中央方針 決定 事項, 法改正 事項
- 常任委 移牒 處理 : 街路燈 補修, 월오동公園墓地 推進 事業
- 結果 回信 : 中央 決定, 道 確定, 道 方針
- 其 他 : 重複 及 其他

7. 農産物 加工工場 現地 訪問

□ 實施 現況

- 實施 日時 : '94. 11. 7
- 實施 場所 : 道內 3個 農産物加工工場
- 訪問 工場
 - 과일加工工場 : 淸原郡 梧倉面 槐亭里 豊元食品
 - 깨, 잣죽工場 : 陰城郡 三成面 德井里 (株) 曉農
 - 김치加工工場 : 中原郡 沘味面 洗星里 沘味農協
- 訪問 結果
 - 農産物 加工 分野에 대한 UR 影響과 展望
 - 農産物 加工 分野 建議 事項 收斂
- 建議 事項 處理 結果
 - 道에 建議
 - 과일 貯藏庫 施設資金을 支援
 - 政府支援 資金을 低利 融資로 支援

〈建議事項處理結果〉

대 정 부(농발위) 건 의

소관국	건 의 내 용
공 보 관 실 내 무 국 보 사 환 경 국 농 정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난시청지역 시청료 징수금지 등 개선대책 요망 ○ 육류 등급제 판매에 따른 세제감면 ○ 농민연금제도 조기 실시 ○ 영농자금 지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3%, 단기채를 장기채로 - 담보대출 완화 (현 담보능력 미흡) - 영농자금 한도액 폐지
농 정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구입 용자지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협으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실정에 어두운 농어촌진흥공사 외지직원 상주
농 정 국	○ 전업농에 필요한 농지전용의 완화
농 정 국	○ 농진공의 농지구입은 진흥구역이 아니라도 가능토록 조치
농 정 국	○ 농지구입자금 지원시 영농 3년이상 규정 완화
농 정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구모화사업추진 부채지주 협조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규제
농 정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지주 토지를 5년 이상 재촌농민이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농 정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이 농지매수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특별법 제정 요망
농 정 국	○ 시설채소단지 사업자부담 20% 지원 요망
농 정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액이 적음 보조지원 80%로
농 정 국	○ 축협 판매사업 금지
농 정 국	○ 농특세 투자 축산분야 형평성 희망
농 정 국	○ 축산단지 조성을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지원 요망

소관국	건의내용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주택 설계비 과다 ○ 국립공원내 경작농민 많은 불편, 법 완화조치
계	18건

상임위원회 이첩처리

소관	건의내용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오동 공원묘지 추진시 지원 약속사업 이행 촉구 및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 줄것. ○ 농촌가로등 수리비 현실화 조치
계	2건

처 리 결 과 회 신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1 국, 공유지(도, 군재산)를 매각시 년부 상환 조치 및 정부 매각 단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고가.</p>	<p><국유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의2제2항 • 대상재산 시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중 1만㎡이하의 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 하는 때 • 기 간 : 10년 이내 • 납부방법 :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8%의 이자를 붙여 균등분할 • 시 행 일 : '94. 4. 12 <p><공유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대상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중 1만㎡이하의 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 전액 납부가 곤란한 때 • 기 간 : 5년 이내 • 납부방법 :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5푼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균등분할 • 시 행 일 : 기 시행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2. 외지인 소유 휴경지에 대한 세금과징 조치</p> <p>3. 농촌지역에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농로 확포장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p>	<p>○ 정부매각단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고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결정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 가격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만원이하인 재산 : 시가 참작 - 300만원이상인 재산 :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참작 · 감정가액 결정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지가변동을, 공시지가, 도매물가변동률등을 참고로 결정 · 국(공)유 재산의 평가 공부의 내용과 실지가 상이한 재산은 실지를 기준으로 평가 · 실제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p>· 외지인 소유 휴경지만의 과세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지방제제는 휴경지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음.</p> <p>· 금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총 1,026건 (10,643백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823건(8,163백만원)을 농로확포장, 마을안길포장, 마을진입로등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4. 댐 주변 축산폐수 시설은 국가가 설치, 농민이 관리</p> <p>5. 농촌의료보험 부담액인하 - 농촌조합 재정지원 확대 - 의료보험 제도의 전국 통합</p> <p>6. 농가 대출담보 능력 부족 - 정부제정 보증제도 확대 실시</p> <p>7. 충북농어촌소득개발 기금 조성지원액 연간 30억원은 부족하므로 증액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축산능가정화시설 : 설치후 현행대로 농민이 관리함이 타당함. ·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 과다한 운영비 및 고도의 운영기술이 요구되어 설치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 보사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료보험제도 종합개선대책 마련중임.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조합의 재정지원 차등지원 문제 - 의료보험조합 통합문제 등 ○ 농림수산부에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확대지원요청 하였음. - 대출한도액 확대 : 1억까지 → 2억까지 - 신청자 조사항목 접수 상향 조정 - 대상사업가공 유통부문 확대 ○ 조성목표 : 100억원 ○ '94 조성액 : 3,474백만원 (당초예산 확보 16억원) ○ 기금조성 목표 (100억원)달성시까지 계속 조성할 것임.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8. 농촌 관련 기관단체 통폐합으로 조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중임. 	
9. 농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추진 난 - 지역여건 감안 사업 가능토록 개선 - 신중한 검토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체제상 (지원 대상사업, 자원 등) 농민이 원하는 사업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움 지방재정감안, 농민희망사업 추진확대 방침. 	
10. 농촌자녀 교육 고등학교 까지 학비 보조 ○ 대학생은 용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자녀가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8,000명에 지원 2. 대학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에서 용자 실시하고 있음 	
11. 도시지역의 후계자, 전업 농육성을 군지역 수준으로 지원 요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민후계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적은 사유 예비후계자 신청인원이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월등히 적어 배정인원이 적음 2. 전업농어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적은 사유 농어민후계자 인원이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월등히 적어 배정인원이 적음 ○ 청주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배정대상에서 제외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12. UR농업기술 습득 해외 견학 확대</p>	<p>1. 해외연수 실적 - '92 : 44명 - '93 : 59명</p> <p>2. '94년 계획 - 인원 : 54명 (단기 48명, 장기 6명)</p> <p>3. 향후 계획 : 도 재정감안 확대 실시</p>	
<p>13. 농어민후계자 자금상향지 원 현 15백만원 → 실소 요자금으로</p>	<p>1. '93년까지 지원기준 : 1인당 15백만원</p> <p>2. '94년부터 지원기준 : 1인당 15~30백만 원까지 차등확대 지원되고 있음</p>	
<p>14. 생산자 단체장의 권한이 중앙회에 예속, 연합회등 을 만들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의</p>	<p>○ 농협, 축협 업무 전반에 걸쳐서 중앙에 서 검토중임</p>	
<p>15. 농산물판매장 설치시 식당영업허가 요망 - 진흥지역내 농산물직판장 설치시 식당영업 허가 불가능 (한우고기 시식후 판매 원함)</p>	<p>1.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허용행위</p> <p>○ 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p> <p>· 제50조 (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p> <p>· 제51조 (보호구역안에서 행위제한)</p> <p>○ 내용 :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등</p> <p>※ 식당영업은 농업진흥지역내 진흥구역에 서는 불가하나 보호구역안에서는 현지 여건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음</p>	
<p>16. 농지 구입 요건 완화로 불이익 개선 - 신규 영농을 위한 농지 구입시 토지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 필요</p>	<p>○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94. 3. 21) 에 따라 6개월 거주요건 폐지</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17. 부재지주의 땅 농촌젊은 이가 소유하도록 농지 구입자금 확대 지원 - 장기저리자금</p> <p>18. 무허가 축사, 지목이 농 지에 20년이상된 농가주 택의 개축시 농지전용</p> <p>19. 밭 경지 정리 조속 추진</p> <p>20. 관수용암반굴삭기 등 대형관정 시설 요망</p>	<p>○ '94 지원 : 농민후계자 43명 ※ 희망자중 조건에 부합한자 전원지원 하고 있음</p> <p>○ 용도증명을 발급받아 지목변경후 농가 주택 개축 가능</p> <p>1. 사업개요 (단위 : ha)</p> <table border="1" data-bbox="532 793 1085 1058"> <thead> <tr> <th rowspan="2">총 면 적</th> <th colspan="3">정 비 계 획</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계</th> <th>밭 정리</th> <th>기반 정비</th> </tr> </thead> <tbody> <tr> <td>69,978</td> <td>5,091 (7.3%)</td> <td>460</td> <td>4,631</td> <td></td> </tr> </tbody> </table> <p>2. '94 계획 - 사업량 : 170ha (정리 22, 일반 148) - 사업비 : 3,750백만원 (국비 2,250, 도비 750, 군비 750)</p> <p>3. '95년 이후 년차별 시행</p> <p>1. '94 계획 - 사업량 : 8공, 30ha - 사업비 : 300백만원 (국비) [관정개발(농어촌진흥공사) ; 8. 30 이용시설(시군 시행) : 11. 30</p>	총 면 적	정 비 계 획			비 고	계	밭 정리	기반 정비	69,978	5,091 (7.3%)	460	4,631		
총 면 적	정 비 계 획			비 고											
	계	밭 정리	기반 정비												
69,978	5,091 (7.3%)	460	4,631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21. 금성면 사곡저수지 신설 요망 (몽리면적 : 40ha)</p>	<p>※ 공당 사업비 : 3,750만원</p> <p>┌ 개발비 : 1,700만원</p> <p>└ 이용시설 : 2,050만원</p> <p>2. 추진상황</p> <p>- 예정지 현지조사완료 : '94.3.10 (농진) (수맥조사포함)</p> <p>- 사업계획서 작성 : '94. 3. 23 (농진)</p> <p>- 관정개발 : '94. 4. 1~ 8. 30 (농진) ('94. 5.15 현재 4개공 개발)</p> <p>※ 암반굴착기는 농진에서 확보 운영</p> <p>3. 금후계획</p> <p>- 발기반정비확대로 관정개발 연계실시</p> <p>- 시군 사업량 최대반영 - 농림수산부건의</p> <p>- 농진에서 도내 일원 수맥조사 계획</p> <p>┌ 사업량 : 43지구, 258ha</p> <p>└ 기 간 : '94. 6~10. (5개월)</p> <p>1. '94이후 신규 착수 지구는 계속지구 완료후 착수방침 (중앙의 실시요령 : '94. 2. 17)</p> <p>2. 처리과정</p> <p>- '94. 2. 17 : 신규지구도 93이전지구와 같이 시행건의(도→농림수산부)</p> <p>- '94. 3. 18 : 사곡소류지의 축조건의 (군→도)</p> <p>- '94. 3. 21 : 사곡소류지 현지조사(도)</p> <p>- '94. 4. 13 : 소규모수리시설국고보조 신청</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22. 경지정리 규모확대, 국고보조금 확대 (3,000~5,000평)</p> <p>23. 농조통폐합 반대</p>	<p>○ 필지당 1,200평→3,000평이상으로 확대 ('94가을착수부터 적용)</p> <p>1. 농조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543 525 1187 701"> <thead> <tr> <th>조합 수</th> <th>동리 면적</th> <th>조합 원수</th> <th>대의 원수</th> <th>임 직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9</td> <td>ha 29,914</td> <td>명 63,464</td> <td>명 650</td> <td>명 265</td> <td>도답면적 의 37%</td> </tr> </tbody> </table> <p>2. 농지통폐합내용</p> <p>- 배경</p> <p> ┌ 농업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기능이 중복되는 농수산지원조직 정비</p> <p>- 주관 : 국회UR대책소위원회농업기구반 (반장 : 신재기)</p> <p>- 내용</p> <p> ┌ 농조연합회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 └ 농조를 군에 신설되는 지방공기업에 흡수</p> <p> ┌ 농조연합회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 └ 농조를 군에 신설되는 지방공기업에 흡수</p> <p> ┌ 농조연합회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 └ 농조를 군에 신설되는 지방공기업에 흡수</p> <p> ┌ 농조연합회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흡수 └ 농조를 군에 신설되는 지방공기업에 흡수</p> <p>3. 중앙 및 국회에서 검토중임</p>	조합 수	동리 면적	조합 원수	대의 원수	임 직원	비 고	9	ha 29,914	명 63,464	명 650	명 265	도답면적 의 37%			
조합 수	동리 면적	조합 원수	대의 원수	임 직원	비 고											
9	ha 29,914	명 63,464	명 650	명 265	도답면적 의 37%											
<p>24. 벼 직파재배 확대대로 용수량 부족 (저수지고갈 우려)</p>	<p>1. 저수량 현황 (5. 15 현재)</p> <table border="1" data-bbox="539 1524 1211 1734"> <thead> <tr> <th rowspan="2">저수지</th> <th rowspan="2">계 획 저수량</th> <th colspan="2">현 재</th> <th rowspan="2">평년 동기</th> <th rowspan="2">대 비</th> </tr> <tr> <th>저수량</th> <th>%</th> </tr> </thead> <tbody> <tr> <td>개소 887</td> <td>천톤 164,424</td> <td>천톤 128,900</td> <td>79</td> <td>86</td> <td>△ 7</td> </tr> </tbody> </table>	저수지	계 획 저수량	현 재		평년 동기	대 비	저수량	%	개소 887	천톤 164,424	천톤 128,900	79	86	△ 7	
저수지	계 획 저수량			현 재				평년 동기	대 비							
		저수량	%													
개소 887	천톤 164,424	천톤 128,900	79	86	△ 7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25. 용수로 재래식으로 물 손실량 커</p> <p>26. 재경지정리사업 대규모 화</p> <p>27. 소류지 하나씩 알차게 지원</p>	<p>2.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량을 증대코저 여수토 더돋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간 : '94. 3. 1 ~ 3. 30 증가량 : 2,913천톤 증가율 : 1.8% ※ 5. 15. 현재 이앙 실적이 10%로 현재의 저수량으로도 이앙 및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음. ○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3. 30 토공용수로구조물화사업비 지원요청 (농림수산부) - '94. 1. 28 농어촌특별세투자(10개년) 계획수립 반영 요청하였음. ○ '95착수 계획으로 실시 설계 완료 (청원소로301, 보은학림294) ○ '95 소요사업비 180억원 지원요청 ○ '94. 4. 18 (도→ 농림수산부) : ha당 소요사업비 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음. 1. '94 소류지 추진계획 <table border="1" data-bbox="537 1471 1264 1795"> <thead> <tr> <th rowspan="2">지 구 명</th> <th rowspan="2">면적 (ha)</th> <th rowspan="2">총사업비 (백만원)</th> <th colspan="3">년 도 별</th> <th rowspan="2">착공 년도</th> </tr> <tr> <th>'93 까지</th> <th>'94</th> <th>'95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85</td> <td>3,377</td> <td>669</td> <td>336</td> <td>2,372</td> <td></td> </tr> <tr> <td>괴산대곡</td> <td>45</td> <td>1,594</td> <td>548</td> <td>210</td> <td>836</td> <td>91</td> </tr> <tr> <td>제천공전</td> <td>40</td> <td>1,783</td> <td>121</td> <td>126</td> <td>1,536</td> <td>93</td> </tr> </tbody> </table>	지 구 명	면적 (ha)	총사업비 (백만원)	년 도 별			착공 년도	'93 까지	'94	'95 이후	계	85	3,377	669	336	2,372		괴산대곡	45	1,594	548	210	836	91	제천공전	40	1,783	121	126	1,536	93	
지 구 명	면적 (ha)				총사업비 (백만원)	년 도 별			착공 년도																								
		'93 까지	'94	'95 이후																													
계	85	3,377	669	336	2,372																												
괴산대곡	45	1,594	548	210	836	91																											
제천공전	40	1,783	121	126	1,536	93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28. 자연환경 파괴하는 석산 허가 제한</p> <p>29. 산림녹화에서 경제수종으로 대체하여 수종갱신 보조금 지원을 확대요망</p> <p>30. 표고버섯 재배지원 사업비 추경 책정 요망</p> <p>31. 조경수 생산농가 지원요망</p>	<p>2. 신규지구도 '93이전 착수지구 보조율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 '94. 2. 17</p> <p>- 대상지구 선정 계속 중앙지원 건의</p> <p>○ 신규개발억제</p> <p>-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은 채석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p> <p>- 조업중단개소의 자원 최대활용</p> <p>○ 채취적지 복구 철저</p> <p>- 허가 기간중인 개소 : 중간복구 실시</p> <p>- 허가가간 만료개소 : 조경적인 완벽한 복구 실시</p> <p>○ 산림청 지정 경제수종을 조림하고 있음.</p> <p>○ 단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두충나무, 두릅나무 조림하고 있음</p> <p>○ 조림사업비 국고보조금은 년차적으로 상향 보조되고 있음.</p> <p>○ 차후 추경재원 감안 검토하겠음.</p> <p>○ '94조경수생산자금 융자지원:100백만원</p> <p>※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년리 5% 3년거치 7년 상환</p> <p>○ 년차적으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음.</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32. 농수산통계 정확히 조사하여 농민이 활용가능토록 조치</p> <p>33. 대청댐 영농대책 (안개등으로 영농지장)</p>	<p>○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통계가 작성 공표되도록 상부에 건의 ('93. 4. 8) <p>→ '96년도에 예산반영코자 검토증으로 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후 조사 입수되는 작물통계는 신속히 농민에 전달 조치 계획임. <p>1. 현황</p> <p>○ 댐 기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댐 : '80년설치, 저수면적 72.8km² - 충주댐 : '85년설치, 저수면적 97.0km² <p>○ 댐주변지역 기상변화 (전, 후 비교)</p> <table border="1" data-bbox="543 925 1094 1225"> <thead> <tr> <th>구 분</th> <th>평균기온 (℃)</th> <th>일조시간 (시간)</th> <th>안개일수 (일)</th> <th>강수량 (mm)</th> </tr> </thead> <tbody> <tr> <td>대청댐 (보은)</td> <td>+0.4</td> <td>- 99.8</td> <td>+ 17.8</td> <td>+163.9</td> </tr> <tr> <td>충주댐 (충주)</td> <td>+0.6</td> <td>-242.2</td> <td>+ 26.5</td> <td>+232.0</td> </tr> </tbody> </table> <p>※ 대청댐 : 건설전 '74~'79 건설후 '80~'85 평균치</p> <p>충주댐 : 건설전 '79~'84 건설후 '85~'90 평균치</p> <p>2. 검토의견</p> <p>○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의 계량적 조사는 지극히 지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건설전 주변지역의 작물별 생산단수 조사 없음 	구 분	평균기온 (℃)	일조시간 (시간)	안개일수 (일)	강수량 (mm)	대청댐 (보은)	+0.4	- 99.8	+ 17.8	+163.9	충주댐 (충주)	+0.6	-242.2	+ 26.5	+232.0	
구 분	평균기온 (℃)	일조시간 (시간)	안개일수 (일)	강수량 (mm)													
대청댐 (보은)	+0.4	- 99.8	+ 17.8	+163.9													
충주댐 (충주)	+0.6	-242.2	+ 26.5	+232.0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34. 유기질비료 공장 보조 지원 요망</p> <p>35. 톱밥분쇄기 이용 유기질 비료 생산방법 강구</p> <p>36. 기계화 전업농 지원연령 상향조정 보조범위확대 (50세 → 60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작황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 (기상상태, 토양, 재배관리, 영농주체등) ○ 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지난 - 보상시는 매년 계속해서 영구적 보상으로 지방 재정 압박 ○ 주변지역에 대한 영농기술지도 강화 - 내 재해성품종(조, 중생종)선택 보급 - 재배관리 및 병충해 방제기술 지도 강화 ○ 환경오염원인 축산분뇨의 재활용으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키 위하여 ○ 연차별로 시, 군단위 1개소 이상 설치 계획임. ○ 톱밥제조기가 고가로 농가에서 설치 운영이 지난하여 ○ 공동퇴비제조장(단양 어상천농협)에 시범 설치 사용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보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기계화 전업농은 가족노동력으로 일반 기계화 농작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는 대형농기계 운전조작이 지난하며 ○ 기계화 전업농 지원연령을 '92년도 45세에서 '93년도 50세로 상향 조정하였음.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37. 대형농기계 반값공급 시정 · 수도작 위주 농기계보급 → 과수분야도 확대지원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에는 집합공급계획으로 공급하고 있어 농가희망기종을 선택 구입할 수 있음. 	
<p>38. 농기계 사후봉사(A/S)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218개 업체가 사후봉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기계수리가 농번기에 집중되어 원활한 사후봉사에 어려움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3개 농촌지도소에서 수리센터운영 및 순회사후봉사 실시 ○ 372개지역에 수리공구를 지원 경미한 고장은 자체수리토록 하고 있음. 	
<p>39. 경운기 데후를 공장에서 직접제작 보급 요망 - 시중부착시 70만원이나 공장제작시 30만원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회사가 경운기 차동기어장치(데후)를 신제품으로 제작할 경우는 1,500천원 이상 소요되며, ○ 농민부담 가중 및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 	
<p>40. 농협농약 관리에 있어 농약판매업 자격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은 독극물로서 취급시 소홀할 경우 농작물, 사람, 가축, 환경오염 등에 막대한 피해 발생 우려됨. ○ 따라서 판매업자의 자격은 충분한 조건을 가진 자만이 취급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완화조치는 불가함. 	
<p>41.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적정가격보장조치 - 홍수출하시 가격폭락대책</p>	<p><홍수출하시 가격폭락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를 통한 포전매취, 긴급자금 지원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 생산자가 판매까지 가능한 유통체계마련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장터개장을 통한 직거래확대 추진 ○ 정부에서 수매비축 단경기 방출 	
<p>42. 농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선과장, 저온저장고 설치 요망</p>	<p>< 생산자가 판매까지 가능한 유통체계 마련 요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조직 및 운영활성화를 통한 공동 판매제 확대 추진 ○ 전시판매 및 직거래장터의 확대로 생산자 판매체계 마련 	
<p>43. 과수농가 저장고등 기존 건물이용 가공공장 설치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부터 농림수산부사업계획에 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음 (선과장 300평, 저온저장고 1,846평, 소형선과기 26대) ○ 농가공동(5호이상) 생산자단체가 신청 가능함. 	
<p>44. 서울등 대도시 소비지에 도, 시군단위 공동판매장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계획에 의거 신청 (10월 30일까지 시장, 군수에게 신청) 	
<p>44. 서울등 대도시 소비지에 도, 시군단위 공동판매장 설치</p>	<p>1.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등 대도시에 시군단위 직판장 8개소 운영중 ○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운영성과가 미흡함. 	
<p>44. 서울등 대도시 소비지에 도, 시군단위 공동판매장 설치</p>	<p>2.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판장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매결연처별로 임시매장 개장을 통한 판매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45. 제천시내 북개지역중 일부를 농민의 장터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에서 추진토록 조치 	
46. 청주공항건설시 청주에 화훼공판장 설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2001년까지 전국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청주공항 개항이후 재배면적과 수출가능 물량등을 감안 검토 하겠음 	
47. 농산물정보에 외국산 수입가격 함께 제공 - 수출전담기구 시,군 단위 설치 - 수출자금지원 제도적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담기구의 시군설치는 필요성여부 검토 사항 ○ 농산물가격 전파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 농산물가격을 입수하여 동시 전파토록 협조 요청 ○ 수출자금지원 : 기 시행하고 있음. 	
48. 농산물 수입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협상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억제 지난 ○ 소비자의 외국농산물 소비 자제 절실 	
49. 농업시설등 장기적 안목 의 농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시설은 생산유통종합지원 체제로 전환되어 농어촌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98년까지 년차적 추진할 계획임. 	
50. 사과이중봉지 지원확대 — 신청전액 반영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주경예산에 조치하였음. 	
51. 시설하우스 재설치시 자금융자 지원 하우스내 보온시설 설치 자금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부터 개별지원사업에서 종합유통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어 개별지원사업은 불가하나 ○ 지원대상선정 기준에 의하여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을 설립 추진하면 지원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52. 시설원에 및 화훼현대화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축소 지원</p> <p>- 금액 : 34억 → 17억 규모</p> <p>- 자재 : PC온실→비닐온실</p>	<p>가능함.</p> <p>○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력화를 실시하고 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증양에 건의하겠음.</p>	
<p>53. 포도등 생산비절감을 위한 약제살포기등 기계화 공급대책 수립 요망</p>	<p>○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음</p> <p>(예 : SS분무기 29대)</p>	
<p>54. 느타리버섯용 폐면구입 알선(저렴하게)</p>	<p>○ 폐면은 자연섬유가 많을수록 좋은것으로 1kg에 200~250원이나 작목반 공동구입으로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저렴한 가격일수록 품질이 낮아 버섯 생산량이 적으므로 농가자율결정 (농촌지도소와 상의) 사항임</p>	
<p>55. 가공공장등 사업선정시 검토시간줄 것</p>	<p>○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 제5조규정에 의거 신청접수하여 1개월전에 홍보</p> <p>- 시군 접수시한 : 전년도 10. 30</p> <p>- 도 접수시한 : 전년도 11. 30</p> <p>- 농림수산부 접수시한 : 전년도 12. 30</p>	
<p>56. 대도시 직판장 설립 지원</p>	<p>○ 대도시 직판장 운영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자매</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57.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영농회사별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지원 요망</p> <p>58. 단위농협과 행정기관, 기업체, 단체등 각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지원 요망</p> <p>59. 버섯재배사 자금 확대 지원 요망</p> <p>60. 사과 배가 UR대응품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통계자료 요망</p>	<p>결연처별로 임시매장을 통한 판매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현재 8개소운영)</p> <p>○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계상하였음. - 사업량 : 103동 (읍면별 1동씩) - 사업비 : 412백만원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p> <p>※ 사업추진성과를 분석 후 향후 영농화별로 확대 설치하겠음.</p> <p>○ 앞으로 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한 농산물직거래를 확대 추진할 것임.</p> <p>○ '95년도 재배사 시설자금 120→250만원 시설개선자금 60→100만원을 확대 지원 계획임.</p> <p>○ 사과, 배는 외국산에 비하여 가격면에서는 불리하나 품질이 우수하여 경쟁가능 (사과) - 가격 (원/kg) 한국 1,355원 (100%) → 일본 2,793원 (206%) - 미국산 국내수입시 현지 497원 → 국내 판매시 1,148원 (231%)</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61. 농사용 전기요금 하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시설 월6~7만원소요 - 현재 논농사만(갑) → 밭농사도(갑)으로 <p>62. 축사등 농업용 시설 규제 완화</p> <p>63. 경쟁력없는 한우자금을 계속지원하는데 우려됨</p> <p>64. 축산농정 비전제시 요망</p>	<p>(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과 중국배는 품질이 낮아 한국소비에 맞지 않아 현행 식물방역법상 일본산만 수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높음. · 가격 (원/kg) 한국 1,810원 → 일본 1,798원 (99%) ※ 일본산은 현지가격임으로 관세등 부담으로 국내단가 보다 높게 가격형성 <p>○ 중앙에서 검토중임</p> <p>1.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농지전용 : 1,000평까지 축사건축 : 60평미만 ○ 허가 : 신고대상 이상 면적 <p>2.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전업축산 규모 건축 가능 ○ 한우입식 자금지원이 아니므로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에는 문제점 없음. <p>○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 방안 수립중</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65.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우 희생대책방안 마련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송아지 생산기반 확충대책 - 품목별 경쟁력있는 전업농 육성 - 돼지, 닭의 단지화 - 생산, 가공을 포함한 통합 경영 - 브랜드화한 고품질 육류유통 정착 ○ 현재 수립중인 축산업경쟁력 제고대책에 한우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 ○ 계획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협업체의 육성 - 축협의 한우 번식사업 참여 확대 - 송아지생산 공동목장 조성 - 송아지 가격안정제 실시로 안정가격 이하시 시가차액 정부 보조제 실시 - 한우비육우 전업농 육성 -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확대조성 - 축산폐수처리사업의 완비 -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로 브랜드화한 계열생산 추진 -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확대 - 정육점에 대한 냉장육 취급교육 강화 	
<p>66. 축산분뇨 수리시설을 위한 보조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정화 시설은 '93년도에 지방비 사업으로는 100개소, 중앙사업은 18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정화시설은 154개소를 지원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67.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인양 보도자제 필요</p> <p>68. 농촌집단주택 건립자 부담과중 용자지원 확대 (2천만원 년리 5% → 4천만원 년리 3%로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 사업으로는 지방비 사업으로는 100개소를 지원하여 추진중이고 중앙 사업으로는 간이정화시설이 개소당 420만원으로 상향조정 50% 보조, 50% 용자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정화 시설은 1천만원으로 50%보조, 50%용자로 지원하고 있음. ○ 금후계획으로는 양축농가의 지원 신청을 받아 수질보호 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임. ○ 본 사업은 년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속 지원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 '94. 3. 14 기반조성과장 회의시 주민 부담경감대책 건의 (농림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규모, 현지여건 등을 고려 공사비 전액을 착수년도에 일괄지원 - 주택 건축비 용자조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규모 : 2천만원 → 3천만원 └ 이 자 율 : 년리 5% → 3% - 택지분양금 상환 : 1년내 분할상환 → 15년 분할상환 - 공공시설 용지매입비 : 입주자 공동부담 → 국고부담 전환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69. 대청댐 안남지역 관광 사업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댐 주변의 안남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의거 환경처 고시 90-6호('90.4.2)로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환경처 고시 90-15호(90.7.19)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 이 지역의 관광개발은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어려울것으로 판단됨. 	
<p>70. 농촌지역 공장유치 검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공장유치를 통한 검업확대를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 5개단지, 농공단지 32개단지 등 37개단지 394업체가 입주 가동중이고 개별공장으로 2,322업체를 유치 총 114,429명의 인력이 고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 현재 조성 추진중에 있는 10개 공업단지, 2개 농공단지 등 12개 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373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 향후 2개 공업단지, 8개 중소기업 전용공단, 1개 부품 종합공단 등 11개 공단 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p>71. 경제기획원 물가지수 산출요령 개선 - 농산물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획원 물가당국과 협의하여 농산물 지수는 별도로 산출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음.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72. 개발제한지역지원제도 및 사업확대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여년간 소외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을 년차별로 예산에 적극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면적비율, 인구수, 사업우선순위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음. 	
73. 축사위치가 '인근지역' 이나 축사신축시 관리 가능한 지역도 인근지역으로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1. 1 부터 현행규정상 축사는 1가구당 1,000㎡까지 지을 수 있고 입지는 기존주택의 대지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대지가 부족하거나 인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 또는 환경위생상 부득이한 경우에 기존 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같은 부락내의 인근 토지에도 축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대다수 주민들의 불편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생각됨. 	
74. 부역 및 주택개량 융자금 확대지원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량 및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 ('93. 12. 8)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업량 및 융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75. 국도공사시 농촌진입로 안전시설 등 설계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국도 및 지방도 건설시 농촌진입로 안전시설등에 대하여는 설계단계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p>요망</p> <p>76. 국립공원내의 도로공사 조기 실시 공사 요망</p> <p>77. 충주 단월동제방 미완공 부분 조기공사 요망 (건설부 시행공사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음)</p> <p>78. 경지의 93%가 그린벨트 로 재산권행사 불가능 (농산물가공공장건립 허용 요망)</p>	<p>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공원시설 사업 예산건의가 있을때마다 ('94.1.14 2.14, 5.19)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장관 에게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임. ○ '94. 5. 4자로 건설부장관과 국토관리 청장에게 하천개수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 '94. 1.1부터 현행규정상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은 1가구당 100㎡까지 지을 수 있으며 (구역지정당시 거주자 및 5 년이상 당해특산물을 생산하는 구역내 거주자) 지방자치단체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생산물을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를 건축할 수 있음. <p>앞으로 건설부에서 제도개선방안 마련 시 단순가공공장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의 하겠음.</p>	

건의 및 의견	검 토 내 용	비 고
79. 국립공원내 마을 공원 지역 지정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9. 18 내무부건의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된 국립공원을 축소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되어 공원의 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80. 농촌주재지도사 읍면당 1~2개소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주재지도사를 읍면당 1~2명으로 확대할 경우 지도사가 95~190명이 소요되어 도 전체 농촌지도사(403명)의 24~47%에 해당되어 주재지도사 확대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81. 농어민후계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충북대) 확대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선발 하고 ○ 대상도 농어민후계자외에 농촌지도자를 포함할 것임. 	